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. 5. 15 선고 2017가단371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결 2018. 4. 17

판 결선고 2018. 5. 15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529/99074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
구레등기소 1992. 12. 28. 접수 제62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529/99074지분에 관하여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레등기소 2003. 2. 8.접수 제842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레등기소 1992. 12.28. 접수 제6248호로 채권최고액 100,000,000원, 채무자 C,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 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 또는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 한다)를 마쳤다.

다.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원고의 주장
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이 모두 변제하여 소멸하였거나,피담보채권이 존재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2. 12. 28.부터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.

나. 피고의 주장

피고는 소외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, 소외 C은 피고의 D에 대한 위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이다.

그런데 D은 피고에게 위 대여금에게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계속 변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.

3. 판단

가. 변제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판단

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C의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,이를인정할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2. 12. 28.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으나,한편 을 제2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D에게 약 1억 원을 대여하고, C이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

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므로,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결국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① C은 1992. 11. 18. D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 위임용 인감증명서를교부하였다.

② C은 같은 날 D에게 등기권리증 원본,같은 날 본인이 발급받은 매도 위임용 인감증명서, 부동산 매매계약서 3부에 인감도장을 찍어 교부하였다.

③ D, E은 1993. 4. 3.경 액면금 100,000,000원의 약속어음을 발생하면서,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남부종합법무법인 증서 1993년 제7621호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.

④ D은 피고에게 1993. 11. 15. 2,100,000원,1994. 7. 1. 3,000,000원,1995. 5.

18.4,000,000원,1996.3.22.150,000원,2005.9.27.1,500,000원,2005.11.24.1,000,000원,2007.1.25.

1. 2. 400,000원,2017. 8. 30. 1,000,000원, 2017. 9. 4. 3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4.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 박성 경

별지